##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정 2025년 2월 28일 조례 제225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"는 오산시 오산동 609-10번지에 소재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.
- 2. "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"은 오산시 오산동 617-9번지에 소재한 주민공동이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.
- 3. "사용자"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(이하 "센터 등"이라 한다)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4. "사용료"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5. "관리자"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.

- 1.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: 쿠킹클래스, 교육장, 회의실
- 2.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: 교육장
- 제4조(사용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1.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- 2.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자
  - 3.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

####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

- 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사용허가) ① 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경기 공유서비스 홈페이지(share.gg.go.kr)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.
  - ② 사용허가 이후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(취소)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(취소)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.
  - 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  - ⑤ 시장은 센터 등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시민이나 단체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**제6조(사용시간 및 휴관일)** ① 센터 등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  - ② 센터 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.
 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
  - 2. 그 밖에 시장이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
  -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.
- 제7조(사용료)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그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.
  -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

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
- 2.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
- 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- 2.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
  - 3.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 등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센터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0조(사용자의 의무 등) 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  -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 - ⑤ 사용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제11조(사용자의 설비 설치) ① 사용자가 센터 등의 사용 중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관리자는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

- 1.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- 5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3조(사용료 반환) ①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-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.
  - 1.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전액 반환
  - 2.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: 80퍼센트 반환
  - 3.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: 60퍼센트 반환
  - 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관리·운영 등) ① 시장은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·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기관,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등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  - ③ 센터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예에 따른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]

###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사용료(제7조 관련)

(단위:원)

		면적	사용료				
시설명	공간명	(m²)	기준 시간	금 액 (시간당)	비고		
남촌마을	2층 쿠킹클래스(강의실)	83	1시간	10,000원	냉·난방 이용 시 1시간당		
커뮤니티센터	2층 강의실(회의실)	70	1시간	10,00024			
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	마을공동작업실1(교육장)	48	1시간	5,000원	3,000원 추가		
	마을공동작업실2(교육장)	39	1시간	5,000편	<b>十</b> /「		

구 분	기 준	금 액	비고
빔 프로젝터	1시간	5,000원	
마이크(무선)	1개(기본)	5,000원	2개 보유

- 1. 개방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- ※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
  - 2. 사용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, 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
    - ※ 총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  - 산출 예시) 1시간 사용 예약하였지만, 실제 1시간 30분 사용하였다면 사용료 10,000원 추가되어 20,000원 부과.
- 3. 마이크 1개 추가 사용료 2,000원
- 4. 공간 이용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
### [별지 제1호서식]

##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신 청 자 (대 표 자)		(남,	여)사 용(단 체	자 명)			
주 소			연락	처	전 화		
				휴대경			
실무책임자	(직)	(성명)		(	휴대전화)		
사 용 목 적							
3 6 4 6		명	사용		년 월		시부터
사용인원	(남.	, 여: )	기간			일 시간) 난방	시까지
	기 관 명	시 설	명	사시	<del>장</del>   사용	난방 +여부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비고
사용시설							
「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							
라 위와 같	이 귀 시설	얼을 사용하고	2자 신청합	니다	٠.		
		Ę	월 역	길			
			신청자 성	명 :	(	인 또는	- 서명)
오산시	<b>장</b> 귀하						

※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(share.gg.go.kr) 및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(계획서, 안전관리계획서 등)를 첨부해야 합니다.

#### 허가조건

- 1. 「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준수해 야 합니다.
- 2. 시설 사용 시 사용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시에서 원상복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3. 시설의 개방공간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 야 합니다. 단, 사용 허가한 경우에도 긴급한 행정 목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4. 다음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.
  - 가.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나. 허가한 사용 목적 및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에게 무단 으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  - 다.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- 라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  - 마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바. 그 밖에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5. 시설 사용 후에는 청소 등을 하여 원상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, 가져가야 합니다.
- 6. 시설 사용 시 음향 ·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 혐의를 해야 합니다.
- 7. 부가시설 설치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허가를 받아 야 하며,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.
- 8.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추후 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.

### [별지 제2호서식]

## 시설 사용허가 변경(취소)신청서

신 청 자 (대 표 자)		(남,	여)	사 용 (단 체	· 자 명)					
	7 )		어리		전	화				
주 소				연락	<sup>-</sup> 석 	휴	대전화			
실무책임자	(직)	(성명)			(-	휴대	전화)			
내가(킨지) 기 <b>0</b>			인원	Ę	ł초		명(남	, (	겨 )	
변경취소)사유			변경 1		년경		명(남	, (	겨 )	
사용기간	당 초	년	월	일	: ~	월	일	:	(	시간)
^	변 경	년	월	일	: ~	월	일	:	(	시간)
		당 초		변 경		경				
	기관명	.1.311	>1 (	용시간	,	\설 <sup>및</sup>	넍	사용기	시간	비고
	, 2 0	시설명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중시간 		1 =				
사용시설	, = 0	시설명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<b>6</b> 기선	,	16	O	, 0		
사용시설		시설명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8-714 <u>.</u>	,	16				
사용시설		시설명	^F-	5*/\{L		16				
사용시설		시설명	\f-{	5714		16				
사용시설		시설명	\r\-\-\-\-\-\-\-\-\-\-\-\-\-\-\-\-\-\-\	57141						

「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

(취소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오 산 시 장 귀하

## [별지 제3호서식]

# 시설 사용(변경) 허가서

신 청 자 (대 표 자)			(남, 여)	) 연락처				
주 소					·			
사용목적								
사용시설								
사용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	(	시간)
사 용 료								
변경사유								
기타사항								
	남촌마을 <i>커</i> 시설의 사용		}(변경허기			조례」	제52	조제3

오산시장 인